# 문산역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년 11월 07일(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07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택지유형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비규제 지역	민간택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6개월	없음	9	덕용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1.07(목)	2024.11.18.(월)	2024.11.19.(화)	2024.11.20.(수)	2024.11.26.(화)	24.11.30.(토)~ 24.12.06.(금)	24.12.09.(월)~ 24.12.11.(수)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0	기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b>디금 충족</b>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여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까지</b>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까지</b>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aju3-dmapt.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 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표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7.(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7 8	EHDD	일반공급	급 1순위	이비고그 3소이	FLM TINL T	니크지스	레아베컨	
구 분	특별공급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1.18.(월)	2024.11.19.(화) 2024.11.20.(수)			2024.11.26.(화)	2024.11.30.(토)~	2024.12.09.(월)~	
	, ,			, ,	2024.11.20.(되)	2024.12.06.(금)	2024.12.11.(수)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u>l</u> ) 청약홈(09:0	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 법	1	-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 성약홈:: https://www.applyhome.co.kr		동 1041-5버지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기	<b>가입은</b> 행	8 7 B.: https://www.apprynome.co.ki		8 1041-25/1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 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 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국방부(국군복지단)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파주시 내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지세를「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분양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 기재 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납부기한 : 2022.12.31. 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교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46089호(2024.11.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9~28층 7개동 총 951세대[조합 152세대, 임대 48세대, 보류지 3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748세대 [특별공급 375세대(기관추천 76세대, 다자녀가구 76세대, 신혼부부 134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6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주	택공급면적(	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독 관리번호	모델	구작성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4780A	59A	59.4780	22.4380	81.9160	33.4790	115.3950	32.8060	288	29	29	52	9	26	145	143	14
	02	059.8850B	59B	59.8850	22.2660	82.1510	33.7080	115.8590	33.0310	197	20	20	35	6	18	99	98	10
2024000646	03	074.4640	74	74.4640	26.6510	101.1150	41.9150	143.0300	41.0720	216	22	22	39	6	19	108	108	10
	04	084.5640	84	84.5640	29.6690	114.2330	47.6000	161.8330	46.6430	47	5	5	8	1	4	23	24	4
					합 계					748	76	76	134	22	67	375	373	38

-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0.3025 또는 m²÷3.3058)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059.4780A	059.8850B	074.4640	084.5640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59A	59B	74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59A	59B	74	84	합 계
		국가유공자	4	3	3	1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4	3	3	1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3	3	1	11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기도	7	5	6	1	19
기단무단 국일이다	장애인	서울특별시	4	3	3	1	11
		인천광역시	3	1	2	-	6
		중소기업 근로자	3	2	2	-	7
		계	29	20	22	5	7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파주시 및 경기도(50%)	15	10	11	3	39
되시되기구 독일이다	서-	울특별시, 인천광역시(50%)	14	10	11	2	37
	신혼부부	특별공급	52	35	39	8	134
	노부모부잉	· 특별공급	9	6	6	1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26	18	19	4	67
	합	계	145	99	108	23	37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공급			해당		공급금액		계약금	計(10%)			중도	급60%			잔금(30%)
표기	ᆼᆸ 세대수	동,호	층구분	에 이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五八	세네ㅜ			세네ㅜ	네시미	240	- "	계약시	30일이내	2025.04.10	2025.09.10	2026.04.10	2026.11.10	2027.03.10	2027.06.10	비구시경로
		304동 3,4,5,6호	1층	4	89,613,300	202,286,700	291,900,000	10,000,000	1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87,570,000
			2층	9	90,534,300	204,365,700	294,900,000	10,000,000	1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88,470,000
			3층	9	91,486,000	206,514,000	298,000,000	10,000,000	1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59A	288	301동7호 302동3,4,5,6호	4층	9	92,437,700	208,662,300	301,100,000	10,000,000	2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90,330,000
		304동3,4,5,6호	5~15층	98	94,310,400	212,889,600	307,200,000	10,000,000	2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92,160,000
			16층이상	70	96,183,100	217,116,900	313,300,000	10,000,000	21,330,000	31,330,000	31,330,000	31,330,000	31,330,000	31,330,000	31,330,000	93,990,000

		304동1호	1층	1 1	91,424,600	206,375,400	297,800,000	10,000,000	1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89,340,000
			2층	5	92,376,300	208,523,700	300,900,000	10.000.000	2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90.270.000
		301동3,4호	3층	5	93,358,700	210,741,300	304,100,000	10,000,000	2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91,230,000
		303동1,2호 304동1호	4층	5	94,310,400	212,889,600	307,200,000	10,000,000	2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30,720,000	92,160,000
					· ·	' '	, ,			· · ·		, ,	, ,			· · ·
			5~15층	45	96,244,500	217,255,500	313,500,000	10,000,000	2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94,050,000
		303동1,2호 304동1호	16층이상	28	98,025,100	221,274,900	319,300,000	10,000,000	21,930,000	31,930,000	31,930,000	31,930,000	31,930,000	31,930,000	31,930,000	95,790,000
		304동2호 305동3호 307동6호	1층	3	87,095,900	196,604,100	283,700,000	10,000,000	1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85,110,000
		301동6호	2층	5	88,016,900	198,683,100	286,700,000	10,000,000	1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86,010,000
		302동2호	3층	5	88,937,900	200,762,100	289,700,000	10,000,000	1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86,910,000
		304동2호 305동3호	4층	5	89,858,900	202,841,100	292,700,000	10,000,000	1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87,810,000
		307동6호	5~15층	52	91,670,200	206,929,800	298,600,000	10,000,000	1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89,580,000
59B	197	301동6호 304동2호 305동3호 307동6호 305동2호 306동2호 307동5호	16층이상	27	93,727,100	211,572,900	305,300,000	10,000,000	20,530,000	30,530,000	30,530,000	30,530,000	30,530,000	30,530,000	30,530,000	91,590,000
			1층	3	88,876,500	200,623,500	289,500,000	10,000,000	18,950,000	28,950,000	28,950,000	28,950,000	28,950,000	28,950,000	28,950,000	86,850,000
		301동5호 302동1호 305동2호 306동2호 307동5호 301동5호 305동2호 306동2호 307동5호	2층	5	89,828,200	202,771,800	292,600,000	10,000,000	1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87,780,000
			3층	5	90,841,300	205,058,700	295,900,000	10,000,000	19,590,000	29,590,000	29,590,000	29,590,000	29,590,000	29,590,000	29,590,000	88,770,000
			4층	5	91,762,300	207,137,700	298,900,000	10,000,000	1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89,670,000
			5~15층	52	93,542,900	211,157,100	304,700,000	10,000,000	2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91,410,000
			16층이상	30	95,906,800	216,493,200	312,400,000	10,000,000	2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93,720,000
		305동1,4,5,6,7호 306동1,3호 307동7호	1층	8	114,664,500	258,835,500	373,500,000	10,000,000	2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112,050,000
		301동1,2호	2층	10	115,861,800	261,538,200	377,400,000	10,000,000	2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113,220,000
74	216	305동1,4,5,6,7호	3층	10	118,256,400	266,943,600	385,200,000	10,000,000	2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115,560,000
		306동1,3호 307동7호	4층 - 15초	10	119,453,700	269,646,300	389,100,000	10,000,000	2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116,730,000
			5~15층	106	119,944,900	270,755,100	390,700,000	10,000,000	2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117,210,000
		301동1,2호 305동1,4,5,6,7호 306동1,3호	16층이상	72	122,707,900	276,992,100	399,700,000	10,000,000	2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119,910,000
		306동4,5호	1층	2	130,628,500	294,871,500	425,500,000	10,000,000	3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127,650,000
			2층	4	132,010,000	297,990,000	430,000,000	1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84	47	303동3,4호	3층	4	133,238,000	300,762,000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	306동4,5호	4층	4	135,172,100	305,127,900	440,300,000	10,000,000	3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132,090,000
			5~15층	21	137,843,000	311,157,000	449,000,000	10,000,000	3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	οιπι=	303동4호	16층이상	12	140,084,100	316,215,900	456,300,000	10,000,000	3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136,890,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증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sup>※「</su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up>※</sup>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이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sup>※</sup>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체에서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paju3-dmapt.co.kr)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의거, 주택 구입 비용(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등)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공급기준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٨i	리방법				
	당첨자빌	<u>남</u>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격</b>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성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	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	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

	■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b>大ね</b> つル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FL#J#I	않습니다.
당첨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선정방법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파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 50%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자 우선 선정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C00B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비테크셔(2)	F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 ,		1년 이상 ~ 5년 미만	5	서울·경기·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3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FUAFTL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22.	<b>コナ正</b>	미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 ,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जज	토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U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	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경기도)에 거주적	하는 <b>무주택세대주</b>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등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딕」제28조제1항의 1순위	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가점 → ③청	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 <b>지역</b> : 해당지역 거격	주자(파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	도)거주자)	
당첨자	■ ② <b>가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에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	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	기재 오류에 의한
선정방법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민소비 미미 민숙지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②〒071¬干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7676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b>※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b>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	L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	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7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FUALTI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대상자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 ① 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J 2단계	Тпон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 <del>공급</del>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천 기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갼	건칙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고등주택이되는 여러 다내대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11.9.4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l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경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공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	게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성	낭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급	H·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	.적		1,500만원	1,00	10만원 500	 )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1순위 추첨제 : ①7 - 2순위 : ①지역 →	지역 → ②- ②추첨 거주자(파 <sup>=</sup>	무주택자 유 주시 거주지	·)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	경기도) 거주자)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m²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	도과 85m²이	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	공급에 관호	한 규칙  별	표1의2 나목)					
	가점항목		성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당첨자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선정방법	①무주택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35	1명	10	5명	30		
	제외)		))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b>ふりスモリス</b>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및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시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VI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비고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 이용은 선택/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모집공고에 대한 신경 - 세대원 등록방법 : 청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2 - 2 청약홈 - 현 +	도회방법: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도회기간: 2024.11.26.(화) ~ 2024.12.05(목) (10일간) 도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저	해공일시 : 2024.11.2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해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VΠ

구 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2024.11.30.(토) ~ 2024.12.06.(금)	■ 문산역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견본주택 - 주 소 : 파주시 다율동 1041-5번지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전원	(10:00~17:0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자격검증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 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유형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전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소득 등)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 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 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의 서류 미제출 시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제출된 자격검증 서류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해당 기간이 경과 시 폐기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 분	서류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공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리 명단으로 접수함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배점기준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신혼부부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0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πl ⊟ O⊧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및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제출(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0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이바고그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통보 를 받은자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본인 접수 시 필요서류 일체
_,,	0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0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 : 계약자 본인발급용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0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	1.07.) 이후 빌	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9 -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홈택스)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자영 업자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등기소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해당직장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방문판매원 <sup>'</sup> 등)	신규 프리랜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홈택스)
비정규직, 일용직	계속적인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일용식 근로자	신규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세구시 (또는 홈택스)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행정복지센터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센터)
	무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전시관 비치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신청자 본인)

	구 분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자격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중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 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공통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del>□</del> 8+	추	주택을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소유한 경우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가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집합건물: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①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② 주민센터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 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VШ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4.12.09.(월) ~ 2024.12.11.(수) (10:00~16:00)	문산역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견본주택
예비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일정 추후 통보 예정	(주소 : 파주시 다율동 1041-5번지)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부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1 &	필수 추가	1 1 111		

		(해당자)			
		0	자격검증서류 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공통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기본서류	0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0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О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0		인지세(정부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일체
대리이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0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1-11-12		"¬' <b></b>	101	· —
아파트	우리은행	1005-404-280792	│ │ 파주문산3리재개발조합 외 1사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이피트	구니는 6	1003-404-200732	퍼무슨인3디세세일보다 되기시	(예 : "3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30105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sup>※</sup>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1.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2.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 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특별공급 당첨=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부적격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됨.
  - 부부외 세대원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 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 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중 총 공급금액의 60%에 대하여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나누어 신청되어질 수 있음)에 "갑"이 통보하는 일시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 시 발생비용(수수료,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을"이 중도금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은 지정계좌로 입금되는 방법으로 실행되며, "을"은 이에 동의합니다.
- "을"이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지 아니하거나 대출받은 금액이 공급대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을"은 각 중도금 또는 그 차액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에 중도금이 미입금되는 경우 "을"은 지연이자를 중도금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을"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등), DTI(총부채상환비율) 또는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을"에게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을"의 책임으로 중도금(각 지연이자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중도금 1회~6회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되어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갑"이 대납하기로하며, "을"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이자는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부담합니다.
- "갑"이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이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을"이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을"은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 중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입금하였을 경우 수수료 등 제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을"이 별도로 "갑"의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을"은 공급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지연이자가 가산됨)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해제, 해지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전에 대출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갑"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알선시),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ΙX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 (10%) 전금(80%) 비고
--

		계약시	2026.04.10	입주지정일	
59A	14,350,000	1,435,000	1,435,000	11,480,000	
59B	12,600,000	1,260,000	1,260,000	10,080,000	
74	15,700,000	1,570,000	1,570,000	12,560,000	
84	17,500,000	1,750,000	1,750,000	14,000,000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우리은행	1005-103-018804	동문건설(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3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3010501홍길동)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다르니,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발코니 확장 대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 301동 501호 홍길동인 계약자인 경우 '30105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 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 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 구성 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확장 비용은 외부 발코니 창호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안방)'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 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제거 등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 세대의 공간 활용도 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 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 면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침실1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 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브랜드, 유리스펙, 표현문구 및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 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 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시에 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 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 건축법 시행령 」 및 「 공동주택관리법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 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 가전 옵션)의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플러스 옵션 - ① 현관중문

Χ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비고			
古寺	59A	59B	74	84	0177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529,000	1,650,000	1,562,000	1,584,000	

- 현관 중문 선택시 주택형별 현관 신발장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에 따라 현관 신발장 길이 및 현관 디딤판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1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 ② 거실, 복도 아트월타일 (600X1200)+시트판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공급금액 비고

	59A	59B	74	84	
『확장 기본형』 거실, 복도 아트월타일 + 시트판넬 [거실 아트월1면, 복도포인트월(600X1200) 타일 +시트판넬 및 가구판넬기타벽체)]	2,200,000	1,936,000	1,650,000	1,837,000	
『와이드주방 평면특화 선택시』 거실, 복도 아트월타일 + 시트판넬 [거실 아트월1면, 복도포인트월(600X1200) 타일 +시트판넬 및 가구판넬(기타벽체)]			1,188,000	1,177,000	74, 84타입 중복옵션 선택 시

- 거실,복도 아트월타일(600X1200)+시트판넬 유상옵션 선택 시 복도 포인트월 타일 설치 부분 천장에 픽쳐레일이 제공됩니다.(1개소)
- ▎• 거실,복도 아트월타일(600X1200)+시트판넬 유상옵션 미 선택 시 복도포인트월 및 시트벽면은 벽지로 시공되며, 거실아트월은 400X800타일로 시공됩니다.
- 거실,복도 아트월타일(600X1200)+시트판넬 유상옵션과 무관하게 조명특화 옵션 선택은 가능합니다.
- 아트월 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타일이 설치되는 거실 및 복도 구간은 조명특화(간접조명) 옵션 선택에 따라 단천정 설치 시 타일의 시공 높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플러스 옵션 - ③ 주방특화

	(011 . 0, 171714141 20)				
품목		ШΠ			
	59A	59B	74	84	비고
주방특화 [상부유리플랩장+상부장조명+수입하드웨어 +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벽부형고급악세사리 +아일랜드 무선충전콘센트]	2,046,000	2,057,000	2,838,000	2,695,000	

-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상부플랩장에는 유리도어와, 수입하드웨어, 조명이 설치되며, 독립형 렌지후드와 사각싱크볼이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 미 선택 시 침니형 렌지후드가 상부장에 설치되며, 주방 상부장은 천장높이까지 연장되며 여닫이 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과 무관하게 주방 상판,벽체,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유상옵션과 74,84 타입의 와이드주방 평면특화 유상옵션은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과 무관하게 전기쿡탑, 식기세척기 및 비스포크 냉장고 유상옵션은 선택가능합니다.

#### ■ 플러스 옵션 - ④ 와이드주방 평면특화 / 수납특화 (74.84타입 해당)

프모	공급	비고	
품목	74	84	
선택1. 와이드주방 평면특화 [팬트리+가전소물장 +주방우물천장 설치 및 직간접조명]	4,345,000	4,785,000	
선택2. 알파룸 수납특화 [알파룸 내 시스템선반 추가 설치]	803,000	1,012,000	

- 와이드주방 평면특화와 수납특화 유상옵션은 선택형 옵션으로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와이드주방 평면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팬트리+가전 소물장(장식장)+주방 우물천장 설치 및 직간접조명이 함께 설치됩니다.
- 수납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알파룸 내부에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이 'ㄷ'자 형태로 설치되며 별도의 도어나 마감재 변경은 없습니다. 유상옵션 미 선택 시 알파룸 공간만 제공됩니다.

-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및 온도조절기 설치위치는 달라지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옵션 미 선택 시 알파룸으로 기본제공되며, 바닥은 강마루 벽체는 벽지로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평면레이아웃 및 지급품목이 상이함으로 계약전 안내책자와 도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 ⑤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비고			
	59A	59B	74	84	미끄
『확장 기본형』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벽체, 아일랜드 상판]	2,563,000	2,376,000	2,849,000	2,717,000	
『주방특화 선택시』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벽체, 아일랜드 상판]	3,245,000	3,047,000	3,740,000	3,586,000	주방특화 선택 시 상부장 길이 상이함

- 엔지니어드스톤 제품 특성상 색상과 입자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방 상판, 벽체 설치 시 접합 조인트가 발생되고 본 공사 시 나누기 위치가 달라지거나 추가 변경될 수 있 으며,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은 주방특화, 와이드주방 평면특화, 비스포크냉장고, 가전옵션과 무관하게 선택가능한 옵션 품목입니다.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유상옵션 미 선택 시 벽체는 300X600타일이 설치되며, 상판은 일반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마감됩니다.

■ 플러스 옵션 - ⑥ 조명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비고			
古今	59A	59B	74	84	이프
조명특화 [거실복도 단천장조명+거실 우물천장 직/간접조명 +주방슬림 라인등+신발장 간접등]	1,672,000	1,826,000	1,474,000	1,529,000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 작업등(2개)이 라인등으로 시공됩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에 기본제공되는 직부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우물천장 가장자리 2면에 직,간접조명이 설치됩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1면과 복도 포인트월 천장에는 단천장 조성되며, 옵션 미 선택 시 평천장으로 시공됩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 하부에는 간접등이 설치되며, 천장 센서등과 연동되어 조명이 작동합니다.
- 74.84 타입의 주방 우물천장은 와이드주방 평면특화 옵션과 함께 제공되는 품목으로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식탁 직부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의 설치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 ⑦ 침실1 대형드레스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비고					
古书	59A	59B	74	84	미포		
침실1 대형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벽 판넬 조명형 시스템가구]	1,837,000	1,771,000	2,101,000	3,168,000			
• 침실1 대형드레스룸 선택 시 슬라이딩 도어와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가구가 설치됩니다.							

-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시 판넬형 시스템가구에 면한 벽면의 벽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1 대형드레스룸 유상옵션 미 선택 시 화장대 및 드레스룸(일반형 시스템가구 포함)이 기본제공되며, 벽면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 플러스 옵션 - ⑧ 침실2 붙박이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비고			
古今	59A	59B	74	84	미끄
침실2 붙박이장	1,584,000	1,584,000	1,584,000	1,584,000	

• 침실2 불박이장 선택 시 불박이장에 면하는 벽체 바닥, 천장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침실 불박이장 미선택시 벽체는 벽지,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됩니다.

■ 플러스 옵션 - ⑨ 광폭강마루 바닥재

(단위	• 워	부가가치서	표한)

		비고			
품목	59A	59B	74	84	미北
광폭강마루 바닥재 [거실, 침실, 주방, 복도 바닥 오리진 화이트 그레이 광폭강마루]	495,000	473,000	616,000	693,000	

• 강마루 제품 특성상 제조일별 무늬결,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 플러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추가 추가선택 품목(플러스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 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 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색상과 입자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가공 공법에 따라 평활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 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에 면한 바닥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 벽체, 아일랜드 상판 유상옵션 엔지니어스톤은 제품 특성상 패턴,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매가 발생되고 견본주택에 설치 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_ =	러스	오셔	나비게지	. 01	납부방법	
		古世	급구계외	<b>*</b>	ᆸᅮᆼᆸ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플러스옵션	우리은행	1005-303-018834	동문건설(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3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3010501홍길동)

## ■ 플러스옵션 납부 일정 안내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г IB
1 E	계약시	2026.04.10	입주지정일	기포
플러스옵션 납부일정 및 비율	10%	10%	80%	

# 가전옵션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 가전옵션 - ①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선택안	택안 제조사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세포시	크시ㅇㅗ	59A	59B	74	84	미포
	선택1		거실+침실1	3,498,000	3,498,000	3,762,000	3,762,000	
시스템 에어컨	선택2	삼성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36,000	6,336,000	6,930,000	6,930,000	
저습기(드레스룸)	선택3	전자	거실+침실1+제습기(드레스룸)	5,346,000	5,346,000	5,610,000	5,61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선택		거실+침실1+침실2+침실3+제습기(드레스룸)	8,184,000	8,184,000	8,778,000	8,778,000	제습기 선택가능

■ 가전옵션 - ②주방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古古		59A	59B	74	84	이끄
	비스포크 냉장고 [1도어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6,006,000	6,006,000			59A,B타입은 냉장고장
	비스포크 냉장고+수납장 [1도어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 수납장]	삼성 - 전자			7,128,000	7,128,000	사이즈 변동없음
가전제품	3구 인덕션	L'A	825,000	825,000	825,000	825,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957,000	957,000	957,000	957,000	
	공기 청정시스템	경동나비엔	1,419,000	1,419,000	1,419,000	1,419,000	
	욕실 복합환풍기 (공용, 부부욕실)	힘펠	1,067,000	1,067,000	1,067,000	1,067,000	

13인치 주방TV	새로닉스	627,000	627,000	627,000	627,000	
-----------	------	---------	---------	---------	---------	--

#### ■ 가전옵션 관련 유의사항

- 추가 가전옵션 선택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 선택 품목 총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추가 선택 품목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다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 매립 배관(거실+침실1) 및 관련 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 배관 및 드레인은 설 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 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은 견본주택용 냉,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유상)선택 품목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사양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선택 제품의 사양과 모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유상옵션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제습기는 무선리모콘이 아닌 콘트롤러가 벽체에 설치되며, 옵션 선택 전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습기 사양 및 컨트롤러 위치를 확인 바랍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인치 주방TV 옵션 미 선택 시 10인치 주방TV가 확장 시 제공됩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방 가전 옵션은 주택형별 선택 가능합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배관과 가스쿡탑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가스배관은 다용도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까지만 설치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 미 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기본제공되며, 가스배관이 벽면 및 주방 상부장 상단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가스배관 설치에 따라 주방가구 상부장의 깊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선택시 욕실팬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위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는 기본사양이며 뮤직테라피, 블루투스 스피커 등 별도의 옵션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59A/59B타입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 시 냉장고, 김치냉장고장 사이즈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74/84타입 비스포크 냉장고 설치금액은 주방 수납장 포함금액이며 미선택 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비스포크 냉장고 패널색상은 예시 제품이며 입주시점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패널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계약 시 안내에 따라 제시된 패널 색상 중 선택가능하며, 제품의 출시, 단종으로 인하여 패널 선택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전면패널의 색상은 1년 단위로 변경되므로 비스포크제품 계약자의 색상선택을 위해 입주 6개월 전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 가전옵션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 가전옵션	우리은행	1005-803-018827	동문건설(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3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3010501홍길동)

#### ■ 가전옵션 납부 일정 안내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T 世	계약시	2026.04.10	입주지정일	미北
	가전옵션 납부일정 및 비율	10%	10%	80%	
- 1					

## 참고사항

XI

###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Ⅺ □ 단지 여건 등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천창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나 수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동별로 이용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 옹벽 마감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307동 북측 부출입구 진입도로는 부지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황 도로로서 공공으로 사용됨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인허가 절차에 따라 도로 선형, 경비실 및 문주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15M 도로에 접한 인도 일부는 부지 대지면적에 포함되나 사업시행인가상 공공으로 사용됨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도로, 공원, 주차장은 인허가 진행 중 교통시설물, 선형,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은 공원부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단지와 -3.0~9.0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일부 구간이 조경석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됩니다.
- 단지 서측은 15m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도로 경사로 인해 단지와 -0.7~-9.1m의 레벨차가 발생하며, 이와 인접한 301,302,307동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은 인근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으며, 단지 지상층(GL+33.0)과 -2.1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일부 구간이 조경석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구간은 실 시공 시 인허가 절차 및 인근 주택과와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은 낮은 구릉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단지와 +5.0~7.0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일부 구간이 조경석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구간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1, 302동 서측 단지 주출입구는 단지 지상층(GL+23.0/GL+28.0)과 6.6~11.6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하며, 301동 7호세대 북측에 설치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보로 지상층(GL+28.0)으로 접근 가능하며, 302동 전면 비상차로변에 설치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보로 지상층(GL+23.0)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 단지 서측 15m 도로 건너편에는 문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단지 주변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이동 시 30km/h 이하의 속도로 통행하여야하며, 일부 구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 절차에 따라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전면 보행도로는 공공으로 사용됨으로 임의대로 경계펜스 및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공원 및 경관, 도로는 단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레벨 차이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에 따라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은 예시사항으로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국공립 어린이집

-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인 문산초 배치 예정이며, 초등학교 배정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파주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는 문산중학군(문산북중, 문산동중, 문산수억중, 선유중) 배치예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선지망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근거리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정원 및 결원의 범위내에서 선발권과 전학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학교별 정현원 현황 및 학생, 학부모 선택에 따라 타시군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1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동별로 상이함),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
		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환기창, D.A(환기구) 등 - 크기는 변동될 수 있음)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로 1층 필로티 설치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각 동 필로티 내 각종 설비용 배관
		설치로 인접 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학원 차량 대기 장소 및 외부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 구간은 석재 및 뿜칠 마감이며, 외벽 면의 기본 마감은 페인트로 시공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등용구 및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 간 거리,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교기 유의사항	도 단지내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ㅠ의사항	고시네 환경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 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선생	셔틀스테이션(통학차량대기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단지 지상층은 대지의 경사면으로 인해 5m 레벨차 계단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구획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로 구분하는
		지하주차장의 층수 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차로 인한 경사극복 및 단차구간이 발생되오니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도면을 확인바랍니다.
		• 304,305,306동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304동: 작은도서관, 독서실 / 305동 : 관리사무소,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 306동:다함께돌봄센터, 용역휴게실,
		경로당)이 위치하며, 전면은 데크형태로 지상층(GL+28.0) 외부에 노출되고 후면은 지하주차장과 면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7동 지하1층에는 셔틀스테이션(통학차량대기실), 경비실이 위치하며, 전면은 데크형태로 지상층(GL+28.0) 외부에 노출되며 후면은 일부구간은 지하주차
		장과 면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 307동 남측 부출입구는 비상차량 출입구 및 어린이 통학버스 회차, 대기 공간이 위치하며, 이와 인접한 306, 307동은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상층(GL+28.0)은 비상차량만 접근가능하고, 일반차량은 접근이 불가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 302동 전면 단지 주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 등으로 이와 인접한 301, 302동은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01,302,303,304동 중앙 조경시설에는 어린이 놀이터, 멀티코트, 나무그늘 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5,306동 서측 전면(301동 북측 배면)으로는 어린이 물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수경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배치된
		301,305,306,307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2동 서측 전면부 지하층에는 지하저수조, 펌프실, 전기실이 위치하며, 급배기를 위한 DA창호가 302동 전면 보도측으로 설치되어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완속43대, 급속11대)는 단지 지상층 주차장에 위치하며, 303,304동 남측 지상주차장(GL+23.0), 305,306동 북측 주변에 지상주차장(GL+33.0)에 각각 분산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일부 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2동 서측 전면 경사도로는 비상차량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 통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상시에는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부근에 차량을 통제하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지상층(GL+23.0)으로 일반차량 및 택배차량의 진출입은 불가합니다. 303동 남측 지상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를 통해 지하주차장 내 램프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오니 견본주택의 모형을 확인하시어 이를 확인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2 북측에는 단지의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경사램프 및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301동 북측 외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단지 지상층 (GL+28.0)으로 접근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7동 북측 배면으로는 부출입구 및 경비실이 설치되며 304,305,306동 동측 지상주차장(GL+33.0)으로 접근 및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로 진입가능하며 인근에 배치된 동은 이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04동 1호세대 동측으로 외부 산책로가 조성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1,302,303,304동 필로티 내부에는 일부구간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필로티구조가 없는 305,306,307동은 지상층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301동 1호세대 전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지상층으로부터 지하1층 주차장까지만 이동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5동 동측에 설치된 외부계단실은 지상층(GL+33.0)으로부터 지하1층(28.1레벨)과 지하2층(23.1레벨) 주차장까지 이동 가능한 계단이며,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P1지하주차장 경사램프 진입 및 통로 유효 높이는 2.7m로 지하2층(302,303동만 해당)으로만 소형택배차의 진입이 가능하며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소형택배차의 경우라도 주차구간에 주차는 불가합니다.
- 301, 303동 지붕층 상부에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2동 동측, 303동 북측 배면으로는 지하1층 주차장이 데크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 간의 순환 동선으로 지상에 차량이 통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302,303동은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04,305,306,307동 북서측으로는 지상 옥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304,305,306,307동은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301,302,303동은 지하2층 주차장에 구역별로 설치되고, 304,305,306,307동은 지상층 주차장에 설치 될 예정이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무인택배함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및 마감사양(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시설물(문주, D.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 BI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시설은 동별로 이용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또는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용 (주민공동시설 외)배기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근접 세대는 미관, 소음, 바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의 지상 돌출물이 각 동 계단 또는 지상층 필로티 내부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세대 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 구간,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호수별 최고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라인이라도 층별 공용홀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최초사업시행인가되었고 건축구조기준은 KBC2016 (국토교통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은 KCI-USD12, (한국콘크리트학회)를 적용함.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 창호크기가 협소하거나 창호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개폐가 불가한 창호로 시공됨. 단, 일부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됩니다.
- 각 세대의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합니다.
- 수목의 높이 및 직경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 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 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 출입구, 지하 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 운동 시설의 실외 운동 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 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술 장식품 설치는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외부 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술 장식품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미설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및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 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입면 몰딩 및 일부 구간 석재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벽 및 옥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눈부심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관계 법령(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 복리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 및 운동기구, 가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 시설

- 부대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셔틀스테이션(통학차량 대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304,305,306동 저층부 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5동 6,7호세대 지하1층 주동출입구는 주민공동시설 출입구와 공유하여 사용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b> </b>
택에서 설치된
입과 보행자 진입이
나라 견본주택에
수점 이하 단수
장치가
않습니다
재질은 발코니별,
의하여 결로 및
실내공기를
l, 색상 등)등은
할 수 있음)
설계되었으며,
생하는 민원에 대해
는 하자보수가
<b> </b>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 상판, 벽체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유상옵션)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제품의 특성상 상판 및 벽체는 접합부에 조인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 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색상 및 재질 변경 없음, 동급 이상 적용)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내/외부)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공용부 평면 여건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일부 세대는 현관도어의 좌우개폐방향이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106동 59B,74타입)
- 본 공사 시 가스 배관 일부가 주방 벽면 및 주방 상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일부를 사용하여 주방과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배관과 가스쿡탑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가스배관은 다용도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까지만 설치됩니다.
- 일부타입의 냉장고장은 냉장고/김치냉장고 통합장으로 제공되어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이나 규격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제품을 모두 배치할 수 없을 수 있으며, 냉장고 배치 시 용량에 따라 약 15cm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용도실 천정에는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1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견본주택 설치 위치)에 시공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 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색상,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 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호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하절기에는 상시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냉각수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높이, 색상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트리, 드레스룸 등 옵션 선택 사항에 따라 천정에 설치되는 조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작동 스위치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난간 형태 및 높이, 색상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비스포크 냉장고(유상옵션) 패널색상은 예시 제품이며, 입주 시점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패널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입주시점에 제품의 출시, 단종으로 인하여 패널 색상 선택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주거 플랫폼

• 디이스트 바이비 주거통합 서비스(가칭) 기능 홍보에 대한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입주시 기능개선 또는 미구현 등으로 서비스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디이스트 바이비 주거통합 서비스(가칭)는 입주지정일 기준 4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제공 기간 이후에는 단지와 플랫폼 업체(HT beyond)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월 단위 과금 예정입니다. • 디이스트 바이비 주거통합 서비스(가칭)는 인터넷 접속 및 전용앱 설치가 가능한 스마트폰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 하며(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기기의 별도 제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조건은 플랫폼업체 서비스 (HT beyond)와 사용자간 계약 내용에 준하고, 서비스 내용 및 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디이스트 바이비 주거통합 서비스(가칭)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에 따라 성능개선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기능의 추가 및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에 대하여 예고 후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이용조건은 서비스 제공업체(HT bevond)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혹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 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시스템에어컨을 입주자 개인적으로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하여 배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 등이 외부(발코니 등)로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노출 배수 배관으로 인한 미관 지장 및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 우수 배수배관 이 설치되어 우천 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노출 설치되오니 사전에 견본주택의 노출된 부위를 확인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소화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공용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배관은 공배관으로 설치되며, 사용자가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 삽입 및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계,전기 분야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에는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별 기계 환기 방식이 적용되며, 옵션 선택 시 기계환기 장치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및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 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 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 통신 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단지내에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이동 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나. 이동 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옥상층 : 301, 303, 305동 •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 및 환기구(급/배기)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사업계획승인접수를 (2019년 12월 02일)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고, 가능한분에 한하여 기준 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선택 시에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허가 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팟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 점검구,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냉매매립박스 등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55 -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59A,59B,74)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 주변 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저층부 외부 마감은 석재와 뿜칠,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마감되며, 특화계획에 따라 입면의 디자인 및 마감자재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브랜드, 유리스펙, 표현문구 및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일괄 소등 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 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타입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XI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휘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샤워실/탈의실,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물놀이터, 관리사무소, 용역원 휴게실, 경비실, 주민회의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P1주차장 B2F (302,303동 측)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P1주차장 B2F (301동 측)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P1주차장 B1F (301,304,305,306,307동 측)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P2주차장 B1F (304,305,306,307동 측)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등급	내진설계능력(MMI진도 : VII / 설계지반최대가속도 0.197g)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 당 사업은 2020.09.08. 사업시행인가(접수일2019.12.02)된 사업으로 관련법규 개정전 사업시행인가 접수일 기준을 적용하여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1.000세대 미만)
- 당 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을 적용하여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상 일반(그린 4등급)이상 인증을 취득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예시 이미지)
제01222024-101-0002600호	₩ 178,021,270,000원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화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 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 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가 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신성종합건축사 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도이엔씨
감리금액	2,917,422,200	826,988,371	462,000,000

(단위 : 원 / VAT 포함)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회사명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동문건설(주)
법인등록번호	284971-0002388	110111-0368426
주 소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75번길 148, 3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층(여의도동, 하남빌딩8층)

|■ 견본주택 위치 : 파주시 다율동 1041-5번지 (문산역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견본주택)

■ 홈페이지 : http://paju3-dmapt.co.kr

■ 분양문의 : 031-651-773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문산역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